

# 교원업적평가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51조에 의거 교원의 교육·연구·봉사활동에 관한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평가영역)** 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, 연구업적, 봉사업적의 3개영역으로 구분한다.

1. 교육업적: 교육업적의 평가는 수업담당 실적(책임시수 비율), 휴강 및 보강, 강의 계획서 제출, 성적 제출, 학칙에 의한 성적평가, 강의평가 및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.

2. 연구업적: 인문·사회계열 학과 교원의 연구업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/3이상으로 하고, 예능계열의 연구업적은 국내외 연주, 발표, 지휘 창작활동등에 따른 업적을 의미 한다.(개정2014.2.1)

3. 봉사업적: 교육 및 연구 활동 이외에 교내·외 및 학회 및 기타활동 관련된 업적을 의미한다.

4. 종합 평가: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자의 교육, 연구, 봉사영역 평가결과를 수합, 평균치를 산출하며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, 종합의견을 교원업적 종합평정표에 기술한다.

## 제2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(개정2015.3.1.)

**제4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)** 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겸무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(개정2015.3.1.)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업적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2. 관련 제 규정의 개정
3. 교원의 교육, 연구, 봉사업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관련 업무는 교무처에서 주관한다.

⑤ 심사위원 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.

**제5조(회의)**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② 위원회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### 제3장 업적의 평가

제7조(평가기준) 교원업적평가의 기준은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한다.(개정2015.3.1.)

제8조(교육업적의 평가기준) 교육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1>에 의한다.

제9조(연구업적의 평가기준) 연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2>에 의한다.

제10조(봉사업적의 평가기준) 봉사업적에 대한 영역별 평가는 <별표 3>에 의한다.

제11조(교원업적 종합 평정표) 교육, 연구, 봉사영역 평가결과를 수합, 평균치를 산출 및 판정은 <별표 4>에 의한다.

### 제4장 업적의 평가방법 및 절차

제12조(평가회수 및 기간) 교원업적의 평가는 2년 단위로 실시한다. 단, 위원회의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실시 할 수 있다.(개정2015.3.1.)

제13조(평가대상의 업적 및 구비서류) ① 평가대상의 업적은 본인이 업적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교무팀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기한을 경과하거나 증빙자료 및 서류가 미비된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업적평가표(개정2015.3.1.)

가. 교육업적평가표<별표 1>

나. 연구업적평가표<별표 2>

다. 봉사업적평가표<별표 3>

2. 증빙서류

3. 기타 관련 자료

제14조(업적의 평가방법) ① 교원의 업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 본인이 평가대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며, 위원장이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대행한다.

제15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)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업적에 대한 실적을 교무처 업적평가조사에 의거 작성하여, 매학기 수업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위원장의 확인 검토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위원장은 매학기 수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(개정2015.3.1.)

제16조(이의신청 및 처리)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제출서류 미비 등 평가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② 위원장은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그 재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17조(평가예외) 연구 년, 장기해외연수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을 평가하며 교육 및 봉사업적은 직전(또는 직후) 학년도의 업적으로 같음한다.

제17조의 1(휴직예외)심사대상자의 재임용기간 중에 휴직 기간(제17조에 의한 휴직 제외)이 포함될 때에는 재임용심사 기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한다.(신설2014.9.1.)

##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기타

**제18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임용, 승진임용 등의 심사에 활용한다.

**제19조(재임용 기준)**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. 단 연구업적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.(개정 2012.7.21.)

직 위	평가대상기간	영역별 평점		
		교육업적	연구업적	봉사업적
조 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부 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에 대하여 심의할 시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20조(승진임용 기준)**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,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은 40%이상이어야 한다.(개정 2012.7.21)

구분	평가대상기간	영역별 평점		
		교육업적	연구업적	봉사업적
조교수→부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부교수→교수	최근 6년	240	600	240

**제21조(시행세칙)**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22조(준용)** ① 휴직 만료 후 복직한 교수가 휴직기간이 재임용 심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

②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(신설 2013.8.9.)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

피평가자 소속:

직급:

성명:

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

평가 영역 (배점)	평가 항목 (항목별 배점)	평가기준(항목별 배점) *해당 번호에 O표 할 것	확 인	평가자 평 점
강의(60)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책임시수 비율(10)	① 기준시수 충족(10) ② 70%이상 충족 (5) ③ 70% 미만 (0)	책임시수: 담당시수:	
	휴강 및 보강(10)	① 휴강 없음: 보강 (10) ② 휴강 후 보강 없음(5) ③ 2회 이상 무단휴강(0)	1과목 임의선정 휴강 무: 휴강: 회 보강: 회	
	강의계획서 제출(10)	① 전 과목 제출 (10) ② 1~2과목 미 제출(5) ③ 전 과목 미 제출 (0)	과목 수: 제출 수:	
	성적 제출(10)	① 기간 내 제출 (10) ② 1~2일 지연 (5) ③ 3일 이상 지연 (0)	기간준수: 지연일수: 일	
	학칙에 의한 성적평가(10)	① 전 조건 충족(10) ② 일부조건 충족(5) ③ 전 조건 미충족(0)	1과목 임의선정 상대: % 절대: %	
	강의 평가(10)	① 만족도 85- 100(10) ② 만족도 70 - 84 (7) ③ 만족도 50 - 69 (3) ④ 만족도 0 - 49 (0)	1과목 임의선정 만족도 %	
학생지도 (40)	신입·편입생 유치 기여도(20)	① 4명 이상 (20) ② 2 ~ 3명 (10) ③ 1명 이하 (0)	당해연도 신입생 명 편입생 명 계 명	
	재학생 지도관리(10) (지도학년: 학년)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① 재학률 90% 이상(10) ② 재학률 80~89% (5) ③ 재학률 79% 이하 (0)	직전학기 대비 재학률 %	
	진학 및 취업지도(10) (증빙자료 첨부)	① 60% 이상 (10) ② 20 ~ 59% (5) ③ 19% 이하 (0)	당해연도 졸업생 진학·취업률 %	
계 100점(해당되지 않는 항목: 총점 조정)			총점	점

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20 년 월 일 평가자 직급 성명 \_\_\_\_\_ 인

별표 2

피평가자 소속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급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: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 . 인문·사회·사범계)

구 분	평 가 항 목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O표 할 것	확 인	평가자 평점(%)
학술 논문	① 국제 학술지	① 150%	①	
	② 국내 학술지	② 100%	②	
	③ 기타 학술지	③ 50%	③	
계				

※ 기타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제외한 전공분야 학술단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논문

연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(% . 예능계)

구 분	평가 항목(배점 %) *해당란에 O표 할 것	평가 기준	확 인	평가자 평점(%)
개인 발표회	독주, 독창회(10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 회장		
	지휘, 전곡 반주(30%)	위와 동일		
공동 발표회	전곡 중주, 전곡 중창 (7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 회장		
	2인 공동(50%)	위와 동일		
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	주연, 협연, 연출, 작품 발표(10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 회장		
	조연(50%)	위와 동일		
국제 음악회	독주, 독창, 협연, 발표 (70%)	공인 국제음악제		
종합 연주회	독주, 독창, 중주, 중창, 작품 발표, 편곡(15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 회장		
합창단, 오케스트라	지휘(100%)	광역시급 이상 시립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		
개인 발표회 (동일내용 두 번째)	독주, 독창(50%)	국내·외 대도시 공인된 연주 회장		
	지휘, 전곡 반주(15%)	위와 동일		
계				%

\* 승진 및 재임용 시 독창회, 개인 발표회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    확인자    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평가자    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

피평가자: 소속:

직급:

성명:

봉사업적 평가 항목 및 평점

평가영역(배점)	평가 항목(항목별 배점) *해당란에 O표 할 것	피평가자 평 점	확 인	평가자 평 점
교내 봉사 (50)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① 처장급 이상(30) ② 학과장·연구소장급(20) ③ 각종 위원회 위원 (10) ④ 학생 지도교수(10) ⑤ 각종 회의 참석(5) (무단 불참시 회당 -5점)  * 중복되더라도 50점이 상한임	① ② ③ ④ ⑤  계 점	① ② ③ ④ ⑤	
교외 봉사 (20)	증빙자료 첨부 ① 자치·공공단체 위원(10) ② 각종시험 채점위원(공인 대회, 공쿠르 심사위원) (10)  *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	① ②  계 점	① ②	
학회 활동 (20)	증빙자료 첨부 ① 학술단체·기관 임원(10) ② 학술단체·기관 회의 사회, 발표, 토론 등 (5) ③ 학술단체 회원(1학회당 5점)  * 중복되더라도 20점이 상한임	① ② ③  계 점	① ② ③	
기타 활동 (10) *피평가자는 표시하지 않음	① 학사행정 협조(5)  ② 동료와의 인화관계(5)	① 5. 4. 3. 2. 1. 0. ② 5. 4. 3. 2. 1. 0. 계 점	① ②	
계	100			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         위    확인자    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\_\_\_\_\_ 인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평가자    직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\_\_\_\_\_ 인

